

Muan Web Contents

2021년 06월 19일 17시 48분



목차

목차	2
주정차위반	3
주차와 정차	3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2)	3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3)	3
과태료 금액	3
의견진술	3
신청 방법	3
제출 서류	3
압류해제	4

주정차위반

자주하는질문과 답변

주정차위반안내	무인(CCTV)단속지역	단속법규	단속처리절차
의견진술절차 안내	이의제기절차 안내	과태료납부 안내	과태료감경제도 안내

주차와 정차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과태료 금액

차종	과태료금액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소화전	자진납부시 20%경감	체납시 가산금 징수		
			가산금 (최초5%)	증가산금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최대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80,000원)	32,000원 (64,000원)	2,000원 (4,000원)	매월 480원 (매월 960원)	70,800원 (139,680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90,000원)	40,000원 (72,000원)	2,500원 (4,500원)	매월 600원 (매월 1,080원)	88,500원 (157,140원)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방문, 서면 및 팩스로 의견을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군청 방문, 서면, 팩스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거자료 첨부 가능
- 팩스 신청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시설팀 ☎ 061-450-5680, 5674, 5692

압류해제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전화 주시면 등록된 압류를 해제해 드립니다.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시설팀 ☎ 061-450-5680, 5674, 5692

COPYRIGHT © MUAN-GUN. ALL RIGHTS RESERVED.

MUAN

Web Contents

 무안군